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형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2192 취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1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2 순번 1, 2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취득세, 지



방교육세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프장 운영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B가 2013. 10. 28. 설립하여 골프장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소정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C지구 내 영천시D리, E리, F리 일원 733,99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대중골프장 18홀(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내용의 관광휴양사업인 'G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B는 2013. 9. 13.경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시 H 외 106 필지 726,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B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하고는, 2013. 11. 7. ○○○○○○공사 및 원고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



로 이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2013. 11. 29.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변경)하여 영천시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

1)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고 건축물 5,202.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5. 5. 28. 피고로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6. 1. B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15년간 임대하고 B에 이 사건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지방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당시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94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76,000,000원, 지방교육세 77,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800,000원 합계 892,400,000원(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통틀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자,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8,536,831,6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239,031,280원을 감면받았다.¹⁾

3) 또 원고는 2015. 6. 18.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자,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가액 35,185,948,7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703,718,970원을 감면받았다.

마. 세무조사 결과 및 원고의 취득세등 신고·납부

1) 2016. 5. 20. 실시된 ○○○도 합동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2016. 6. 30. 「원고가 2013. 11. 29.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604,417,734원을 과소신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B에 임대함으로써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소신고된 부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의 추징이 예상되자, 아래 [표 1]의 순번 2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2016. 7. 29. ①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신고누락분에 대한 취득세등의 합계 37,836,140원을 수정신고·납부하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시 감면부분 및 신고누락부분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등과 이

1) 그 후 2016. 5. 9. 취득가액 증가를 원인으로 취득세 2,815,480원을 추가로 신고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사건 건물의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등의 합계 1,262,175,58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원고의 취득세등 신고·납부 내역

순번	신고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1	당초신고	토지 취득	19,400,000,000	776,000,000	77,600,000	38,800,000	892,400,000
2	수정신고	토지 신고누락	604,417,734	33,216,360	3,079,860	1,539,920	37,836,140
3		토지 지목변경	35,185,948,761	927,642,840			927,642,840
4	기한 후 신고	건물취득 (클럽하우스5202.92㎡)	8,536,831,644	315,091,020	15,273,410		330,364,430
5		건물취득 (클럽하우스5202.92㎡) 금액청산분	100,552,930	3,446,980	164,780		3,611,760
6		건물취득 (휴게음식점15㎡)	11,050,000	284,890		24,060	308,950
7		건물취득 (휴게음식점5㎡)	9,090,909	228,860		19,240	248,100
		기한 후 신고 소계		1,246,694,090	15,438,190	43,300	1,262,175,580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6. 7. 6. 2016 사업연도 재산세 합계 14,691,320원, 지방교육세 합계 2,938,020원의 총 합계 17,629,340원을 부과하고, 2016. 8. 10. 2015 사업연도 재산세 합계 14,619,260원, 지방교육세 합계 2,923,550원의 총 합계 17,542,810원(이하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2] 피고의 재산세등 부과처분 내역



순번	처분일	귀속연도	과세표준	부과처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	2016. 7. 6.	2016	234,843,210	587,100	117,420	704,520
2			2,032,391,067	5,080,970	1,016,190	6,097,160
3			3,610,632,900	9,023,250	1,804,410	10,827,660
소계				14,691,320	2,938,020	17,629,340
4	2016. 8. 10.	2015	2,012,892,735	2,516,120	503,220	3,019,340
5			3,331,809,600	8,324,600	1,664,620	9,989,220
6			8,165,495,600	3,778,540	755,710	4,534,250
소계				14,619,260	2,923,550	17,542,810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표 1]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등의 지방세는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등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한편,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원고의 위 2016. 7. 29.자 취득세등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시인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 및 신고시인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전심절차



1)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또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신고시인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세등을 전혀 감면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임이 명백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을 형식적으로만 사업시행자 지정 전·후로 구분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원고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시행자인 ○○○○○○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 ○○공사가 잔금 지급 이전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 이전에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잔금 지급)한 이후에야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시 세무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를 표명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시행



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취득세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B에 임대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일 뿐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골프장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임차인인 B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점, 원고와 B는 금융목적상 형식적으로 분리된 법인일 뿐 100%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38호증,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경과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18.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
○시 일원 86.73㎢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J지방산업단지, K를, 관광휴양사업으로 L 레포츠
타운, G골프장(이 사건 골프장), M골프장, N 수목원 등을 각 개발하기 위하여 C지구를 지정
하고 건설교통부고시 O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공사는 C지구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개발하는 이 사건 개발 사
업(그 사업기한은 당초 2012. 12.까지였으나, 2012. 12. 11.경 영천시고시 P를 통하여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5.
9. ○○○○지사에게 '차입금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을 매각 후 그 대금을 공 사채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공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위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2013. 9. 13.경 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B는 이후 원고 및 ○○○○○○공사와의합의를 통하여 그 매매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
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을 하고 영천시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
다.

2)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 경과

가) 피고는 2015. 2. 13.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표 3】 2015. 2. 13.자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구분	당초		변경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체육시설	157	243,951	193	244,922
건축시설	8	12,614	8	13,085
공공시설		78,720		79,481
녹지시설		398,714		396,511
계		733,999		733,999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고 2015. 5. 28.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건축 연면적 합계 5,363.50㎡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표 4】 2015. 5. 2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내역

건물 명칭	주용도	승인면적(㎡)	비고
(주1)클럽하우스	운동시설	4,017.81	취득세 신고
(부1)가스저장고	운동시설	30.04	
(부2)관리동	운동시설	866.9	
(부3)그늘집(13번출)	운동시설	122.96	
(부4)그늘집(5번출)	운동시설	122.96	
(부5)세차장	운동시설	42.25	
(부6)옥외창고	운동시설	94.72	취득세 미신고
(부7)유류고	운동시설	65.85	
합계		5,363.49	

다) 피고는 2015. 12. 15. 다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시고시Q로 이를 고시하였다.

【표 5】 2015. 12. 15.자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구분	당초		변경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체육시설	193	244,922	189	210,782
건축시설	8	13,085	7	13,013
공공시설		79,481		65,664
녹지시설		396,511		444,540
계		733,999		733,999

라) 한편, 원고는 2015. 6. 18. ○○○○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업종을 '정규대



중제골프장업'으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받았다.

[조건부등록 검토서]

■ 체육시설업 등록요건 검토

분야별	완료(준공 검사, 승인일)	감리(검사), 사용승인 보고자	감리(검사)기관	비고
체육시설 (토목, 조경)	2015.5.30.	R 건설사업관리기술자 S	원고 대표 T	감리완료
건축물	2015.5.28.	원고	○○시 건축지적과 -○○(2015. 5. 28.)	임시사용승인
급수시설	2016.12.31. (준공예정)	급수공사승인	○○시 상수도사업소 -○○(2015. 5. 22.)	조건부사항
가스	2015.5.15.	U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증명서
전기	2015.4.30.	전기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필
소방	2015.5.19.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영천소방서	완공검사증명
통신	2015.5.18.	V	○○시 회계정보과 -○○○(2015.5. 18.)	감리결과보고

■ 검토사항

- 조건부 등록
 - 대중제 골프장업의 경우 6홀 이상, 필수시설(편의·안전·관리시설) 완료
- 조건부 등록 사유
 - C지구 관광휴양사업 미준공
 - 진입도로 미준공 -> 영천시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추진
- 골프장 조성 및 필수시설 검토
 - 정규대중 골프장 18홀 조성 완료
 - 필수시설인 골프코스, 건축물, 골프장내 기반시설, 녹지시설 완료
 - 감리 체육시설 완료보고 및 영천시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 골프홀 및 필수시설 이용에는 저촉사항 없음
- 종합의견: 조건부 등록(실시계획 준공기한까지: 2016. 12. 31.)
 - ○○시도시계획시설사업이미준공되었으나, ○○골프장 조건부 등록의 필수시설인골프코스 18홀과 이에 따른 편의, 안전, 관리시설이 완료되었음
 - ○○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기간까지 협의조건 및 행정절차등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함이 타당함

마) 원고는 2016. 8. 8. 건축물 증축신고를 하여, 2017. 2. 22. 피고로부터 증축된 연면적 42.24㎡(= 증축 연면적 72.28㎡ - 멸실 건축면적 30.04㎡) 부분에 대하여 건



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12. 3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기한 2016. 12. 31.을 2017. 12.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영천시고시 W로 이를 고시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733,999㎡는 사유지 99필지 720,853㎡와 국유지 16필지 13,146㎡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국유지 중 8필지 5,327㎡는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어 2013. 9. 13.자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 726,180㎡(= 사유지 720,853㎡ + 국유지 5,327㎡)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7. 9. 22. 대한민국과 사이에 위 국유지 13,146㎡ 중 10,395㎡에 관하여 무상귀속 받는 내용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801㎡는 여전히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3) 2015. 6. 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책임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차목적물)

본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은 본건 골프장을 구성하는 별지(1) 기재 토지, 별지(2) 기재 건물, 별지(3) 기재 동산과 본건 골프장 운영사업의 사업권자로서의 지위이다.

제2조 (임대차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본건 골프장의 준공 및 본건 골프장 구성자산의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해당 자산의 확보가 완료되는 시점마다 해당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도한다.

제4조 (임대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연도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료 외에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015년: 1,641,790,000원



2. 2016년 이후: 연간 42억 원 또는 임대인이 조달하는 차입 및 투자금에 따른 금융비용
(이자 및 상환금액 포함)과 제경비를 감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
<별지(2)> 본건 골프장 건물 목록(준공 또는 영업개시 시점 확정 예정)
<별지(3)> 본건 골프장 기타 운영자산 목록(준공 또는 영업개시 시점 확정 예정)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은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더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자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3. 11.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²⁾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를 지역균형 개발법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사업시행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첨부한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앞서 납세의무자가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므로,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

나) 취득세에 대한 조세감면의 요건 충족 여부는 취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일단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조세제도의 명확성·확실성·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5942 판결은 취득세가

2) 설령, 이 부분의 판단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서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른 추정사유가 있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감면되는 납세의무의 주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조세감면 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은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개발지구 내에서 단순히 공장의 입지를 지정받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독자적·주도적으로 개발사업 전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수행능력이나 사업·자금계획 등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와는 그 자격요건이나 심사대상·방법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라) 원고는 ○○○○○○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 이전에 관한 동의 문제, ○○시 세무담당 공무원의 견해 표명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만을 의미하고 그 운영사업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이후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 임대하기 전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이므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만을 의미하고 그 운영사업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 제4호는 위 개발계획에는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세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18. ○○시 일원 86.73km²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J지방산업단지, K를, 관광휴양사업으로 L 레포츠타운, G골프장(이 사건 골프장), M골프장, N수목원 등을 각 개발하기 위하여 C지구를 지정·고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단순히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



나라,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 이를 용도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관광휴양사업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3차매각 현장설명서(갑 제2호증)에는 실시계획승인조건 및 민원현황 으로 '요구사항: 골프장 하단부 저수지 생태 자연환경 보존대책, 조치내용: 운영 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시행(연 2회)', '요구사항: X초등학교(50명), 중학교(60명) 골프 육성, 조치사항: 골프장 운영 시 시설물 사용지원' 등과 같이 향후 골프장 운영까지 예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도 '운영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제9호증, 4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운영사업까지 포함 한다는 전제에서 '전국 골프장 산업이 2007년~2009년 사이에 평균 10.3%의 매출액순 손실율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시에도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015. 2. 13.자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을 제12호 증)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조건'에 따르면, ○○○도 체육진흥과는 향후 직원복지증진 차원의 별도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고, ○○시 치수방재과는 개발 중 및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수시설 및 저감시설의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도 민생경제교통과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2015. 6. 18.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만을 의미하고 그 운



영사업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이하 3)항은 원고 주장에 따른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의미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 임대한 2015. 6. 1.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2015. 5. 28. 피고로부터 그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인가확인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준공인가 전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단순히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넘어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로부터 개발사업이 당초의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는 준공인가확인증까지 발급받고 그에 대한 공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건축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반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상 개발촉



진지구 지정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취지
이므로,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게다가 이 사건 개발사업은, 원고가 2013. 12. 16.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된 이후, 2015. 2. 13. 체육시설이 157개, 243,951㎡에서 193개, 244,922㎡로 큰 폭으
로 변경되고 다른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면적도 큰 폭으로 변경되었고,
2015. 12. 15.에도 체육시설이 193개, 244,922㎡에서 189개, 210,782㎡로 큰 폭으로 변
경되고 다른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면적도 큰 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도 2016. 8. 8. 건축물 증축신고를 하였고, 이어 2016. 12. 30.에는 사업기한
이 2016. 12. 31.에서 2017. 12. 31.로 1년 연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위와 같은 실시계획의 변경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
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2015. 6. 1.자로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본건 골프장의 준공 및 본건 골프장 구성자산의 확보가 완료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해당 자산의 확보가 완료되는 시점마다 해
당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목적물을 기재한 <별지(2)>,
<별지(3)>은 모두 골프장 건물이나 기타 운영자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B에 임대할 당시 이 사건 골
프장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계속해서 골프장 조
성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및 주요 건물이 건축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은 단순히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및 주요 건물을 건설하여 사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광휴양사업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국한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이 당초 실시계획에 따라 그 코스 및 주요 건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편의와 안전을 위한 부속 건물이나 부대시설, 쾌적한 환경과 미려한 경관을 위한 조경 및 장식,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진입도로 등이 모두 완비됨으로써 구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목적이 달성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사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3년 이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유인함으로써 그 사업부지를 사용한 개발사업의 촉진을 도모하되, 다만 3년 이내에 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유지해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작업 그 자체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지 않고 원고 스스로 계속해서 골프장 조성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골프



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소유자가 골프장 개발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우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일부만을 조성한 채 그 운영을 모두 B에 임대한 이상,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게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정의규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행정부가 작성한 입법 자료에 의하면, 「당초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견해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었는데,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수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개정하였다.» 고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B에 임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한 이상 이를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여전히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가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골프장 조성을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등의 추정규정을 둔 취지, 골프장 코스와 일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용승인된 부분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나머지 부분에서 원고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그 조성공사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에 환경상, 미관상, 안전상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목적의 달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원고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골프장 조성이 일부라도 완료된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그 조성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만약 원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골프장 조성이 완료된 부분만이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3년 내에 골프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취득세가 추정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조세의 명확성·확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했던 골프장 조성사업 전부가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에 그 부동산을 골프장 조성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B에 임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의 제2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3)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B가 2013. 8.경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받으면서 골프장 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대주주측의 요구로 실질적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한 B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내부적인 자금조달 또는 수익성의 문제로 인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장애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이해랑

판사 박상한



별지 1.

[표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순번	과분일	과속 연도	과세표준	부과처분			정당세액			취소청 구 금액
				재산세	지방 교육세	소계	재산세	지방 교육세	소계	
1	2016.	2016	234,843,210	587,100	117,420	704,520	293,550	58,710	352,260	352,260
2	7. 6.	년	2,032,391,067	5,080,970	1,016,190	6,097,160	2,540,485	508,095	3,048,580	3,048,580
3			3,610,632,900	9,023,250	1,804,410	10,827,660	4,511,625	902,205	5,413,830	5,413,830
소계			5,877,867,177	14,691,320	2,938,020	17,629,340	7,345,660	1,469,010	8,814,670	8,814,670
4	2016.	2015	2,012,892,735	2,516,120	503,220	3,019,340	-	-	-	3,019,340
5	8. 10.	년	3,331,809,600	8,324,600	1,664,620	9,989,220	4,162,300	-	4,162,300	5,826,920
6			8,165,495,600	3,778,540	755,710	4,534,250	-	-	-	4,534,250
소계			23,510,197,935	14,619,260	2,923,550	17,542,810	4,162,300	-	4,162,300	13,380,510

[표 2]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액

순번	신고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세액 합계	분류 대상
1	당초(일반) 신고	토지 유상취득	19,400,000,000	776,000,000	77,600,000	853,600,000	경정청구 거부처분
2	수정신고	토지 과표누락분	604,417,734	33,216,360	3,079,860	36,296,220	
소계			20,004,417,734	809,216,360	80,679,860	889,896,220	
3	기한 후 신고	토지 지목변경	35,185,948,761	927,642,340	-	927,642,340	신고시인
4		건축물(클럽하우스) 원시취득	8,536,831,644	315,091,020	15,273,410	330,364,430	결정
5		건축물(클럽하우스) 원시취득	100,552,930	3,446,980	164,780	3,611,760	
6		건축물(출입구 캐노피) 원시취득	11,050,000	284,890	-	284,890	
7		건축물(흡연부스)	9,090,909	228,860	-	228,860	
소계			43,843,474,244	1,246,694,090	15,438,190	1,262,132,280	

끝.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다. 제5조, 제14조, 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2.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3. "민간개발자"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란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5.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자)

- ①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② 지구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내용 및 규모
 2. 재원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 능력 및 경험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 ③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9조제3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해당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



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시행자)

-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②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3. 사업시행기간
- ③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④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신고를 하였을 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자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제28조(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구 분할에 따른 부분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착공 전 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할 것)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換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처분 실적 및 계획
5.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 ③ 지정권자가 준공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준공인가의 공고)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일
5.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제35조(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등 민자유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임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



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8-07-0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끝.